

제401회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임시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2년12월20일(화)

장 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3)
2.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97)
3.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17)
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020)
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61)
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87)
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67)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88)
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91)
1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92)
11.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93)
1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47)
1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56)
14.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76)
15.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20)
1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97)
17.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09)
18.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03)

상정된 안건

1.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3) 3
2.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97) 3
3.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17) 3
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020) 3

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61)	3
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87)	3
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67)	3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88)	3
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91)	3
1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92)	3
11.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93)	3
1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47)	3
1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56)	3
14.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76)	3
15.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20)	3
1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97)	3
17.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09)	3
18.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03)	3

(14시04분 개의)

○소위원장 박성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1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가 후반기 법안1소위 소위원장을 맡고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중 위원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첫 회의인 만큼 위원들께서도 가볍게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 서울 영등포갑 김영주입니다.

박성중 위원장님을 모시고 1소위 위원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모쪼록 의원들이 어렵게 법안을 내셨는데 우리가 꼼꼼히 법안 심의를 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전체회의를 통해 우리 소위 안건들이 본회의에서 많이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부의장님 모시고 하려니 뻔합니다.

변재일 위원님.

○변재일 위원 전반기에 정보통신소위에 있다가 이번에 소위를 옮겼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첨단전략산업의 육성에 대해서 국가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하실 정도로 강조하고 계시고, 국민들의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큰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과학기술 발전을 제대로 보완해 나가려면 우리 국회에서 관련 예산의 확보라든지 관련 법제도가 제때, 어떻게 본다면 선도적으로 정비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안이 많이 밀려서 행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 국민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법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의 그동안 논의가 지연된 법이라든지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새롭게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법들이 제때에 우리 사회가 움직이고 과학기술계가 움직이고 정부가 움직이는 걸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법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변 선배 위원님 잘 부탁드립니다

겠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이정문 위원 오늘 하반기 과방위 첫 번째 법안제1소위가 열리는데요, 충실한 법안 심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조승래 위원님.

○조승래 위원 조승래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하영제 위원님.

○하영제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박완주 위원님.

○박완주 위원 앞서서 선배·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요 21대 해는 거의 뉘엿뉘엿 다 떨어지는데 제가 3선 하면서 역대로 과기정통위원회가 법안소위 통과율이 제일 낮은 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1년 반이라는, 약 1년 남짓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늦었지만 1소위 박성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들이 지난 전반기 때 못 했던 법안 심의까지 속도를 내서 만회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특히 1소위는 제가 봐도 크게 쟁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소위나 기타 정치적 이해 때문에 소위가 안 열리는, 그래서 처리가 안 되는 그런 게 왕왕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대표발의한 의원님 뿐만 아니라 새 정부에서도 또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기본적인 대한민국 전략산업, 전략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법적 토대를 만드는 데는 여야가, 아무리 지도부가 싸운다고 하더라도 우리 과방위 1소위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모여서 밀린 숙제 하고 이렇게 하는 소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도 박성중 위원장님 잘 모시고 밀린 숙제 잘해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박완주 위원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3)

2.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97)

3.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17)

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020)

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61)

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87)

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67)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88)

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91)

1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92)

11.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93)

1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47)

1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56)

14.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76)

15.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20)

1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97)

17.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09)

18.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03)

(14시10분)

○소위원장 박성중 의사일정 제1항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18항 박성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8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과기정통부와 원안위 소관 법안심사를 위하여 오태석 1차관과 임승철 원안위 사무처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배석한 정부 관계 직원들께서는 답변하는 경우에는 속기를 위하여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소위원회 진행을 위하여 회의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협조 부탁드립니다.

심사 방법을 안내해 드리면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먼저 보고를 들은 후에 정부 측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통하여 법안 내용이 정리되면 법안 제명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지민 심사자료 1쪽입니다.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대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개발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로서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 우주개발 전문기관 지정, 우주발사체 발사 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합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 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주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대상으로 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4쪽입니다.

조 제목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오태석 과기부 1

차관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개정안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과 3항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2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지민 소위 심사자료 1쪽입니다.

법률안 논의 경과를 살펴보면 조승래 의원안에 대해서는 지난 3월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지난 4월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한 바 있습니다. 김영식 의원안은 지난 11월 전체위에 상정되어 소위로 회부되었습니다.

법률안 제정 필요성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주요국을 중심으로 국가 차원에서 미래 신기술을 경쟁적으로 육성하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한정된 국가 자원을 고려할 때 향후 국제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요 역할을 하게 될 전략기술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지원 체계하에 일정 수준 집중된 자원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행 국내 기술 육성체계는 부처별로 개별 법률에 따라 각각 지정·지원 및 보호되고 있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에 기술 신흥 단계부터 성숙 산업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해야 할 전략기술 전 분야를 포괄하는 최상위 법률의 입법을 위해 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의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법률 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핵심적인 주장은 제정안의 국가전략기술을

국가전략과학기술로 수정하자는 의견입니다.

제정안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의 유사·중복으로 인한 혼란 방지 및 역할 분담을 위해 제정안의 국가전략기술을 국가전략과학기술로 수정하고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 중 정부의 R&D 지원을 통해 육성이 필요한 기술을 규율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상용화·사업화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중복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외에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확대하자는 의견, 정보수집 범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리고 다른 법률과 중복되는 부분의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자부 의견에 대해서 제정안은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부처별로 산재된 역량을 결집한 범부처 육성 체계를 구축하여 주요 전략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상용화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기술 유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수반되는 등 엄격한 규제가 따르므로 반도체 등 특정 초격차 산업 분야에 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제정안의 규율 범위를 상용화 이전 기술로만 한정할 경우 우주, 양자, AI, 사이버 보안 등 대부분의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산자부 외에도 기재부, 교육부, 국방부 등에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관련 부처 의견 중 반영이 가능한 부분들은 각 조문별 수정 의견에 반영하여 놓았습니다.

11쪽입니다.

조문별 검토는 쟁점이 있는 부분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의 제명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인데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전략기술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전략과학기술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수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제2조 국가전략기술의 정의와 관련하여 지난 3월 공청회 때 조건의 해석 방식에 따라 기술 범위가 너무 좁거나 혹은 너무 광범위해지는 문제

가 발생하므로 명확한 정의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김영식 의원안과 같이 정의할 경우 반도체 디스플레이, 첨단바이오, 수소, 양자 등 12개의 전략기술 선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조문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의 정의를 경제효과, 외교·안보, 신산업 창출 등 세 가지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국가 성장동력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는 부수적인 요소이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27쪽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제정안은 이 법을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김영식 의원안 제4조 단서는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기술육성주체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원적 성격의 규정인 경우에는 문제될 것이 없지만 안 제31조와 같이 기술육성주체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기술육성주체에게 유리한 다른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한 강력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첨단전략기술에도 해당하는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보호조치 등에 관하여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제정안 8조 국가전략기술의 선정·관리 및 확인 신청 관련된 내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영식 의원안 제8조제4항에 대하여 기술육성주체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기업의 기술개발 사업의 과도한 침해·위축이 우려되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정의견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자부는 국가전략기술 선정 변경 또는 선정 해제 과정에 관계부처와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수정의견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국가전략기술 지식·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영식 의원안 제16조제3항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확보한 지식·정보라는 규정으로는 범위를 한정할 수 없어 기업의 기술개발 사업의 과도한 침해·위축이 우려되므로 해당 조항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수정의견에 삭제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52쪽 하단입니다.

김영식 의원안 제17조제2항과 관련하여 산자부는 자료요청의 범위를 한정할 수 없어 기업의 기술개발 사업의 과도한 침해·위축이 우려되므로 삭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수정조문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제정안의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 지정·운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부 의견을 보시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시행·관리 주체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이며 이에 대한 정책지원기관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이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총괄하는 과기정통부가 정책지원기관을 지정·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산자부의 의견은 수정의견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71쪽입니다.

성과점검 총괄기관의 지정·운영입니다.

국가전략기술 분야별로 전략연구과제와 국가전략기술의 확보 추진상황 등을 총괄 점검하는 기관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에 따른 전문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성과점검 총괄기관 지정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계부처를 관리·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점검 총괄기관이 관계부처를 관리·조정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산자부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김영식 의원안 제12조제5항은 전략연구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법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과기부장관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자체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과

기부장관에게 자체평가를 면제해 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과기정통부는 해당 조항은 과기정통부장관이 성과평가법 8조에 따른 특정 평가를 할 경우 같은 법 7조에 따른 자체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취지이므로 이를 반영한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105쪽입니다.

국가전략기술 정보 보호 등입니다.

국가전략기술은 외교·안보 관점에서 중요한 기술이라는 점에서 정보 보호 및 보안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정안에서는 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필요한 조치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한 조치를 구체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제정안은 기술육성주체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정부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에 알려야 하는 정보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보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김영식 의원안 제31조 5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1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하여 소관 전략연구사업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술육성주체의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정보원장과 합동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반영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김영식 의원안 제28조제2항제1호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력수급 동향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에 과도한 침해·간섭이 우려되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관련 부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별도 책자로 돼 있는 147쪽입니다.

지자체가 지역기술혁신허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조승래 의원안 제31조에 대하여 과기정통부는 지역혁신허브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지역혁신허브를 구성하여 신청하고 과기부장관이 국가전략기술과 지역산업 간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김영식 의원안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영식 의원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 여부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지정절차를 규정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기부는 지정된 경우에만 제24조제4항에 따른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예산 지원만을 위해 지정절차를 두는 것은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정절차를 둘 필요가 있는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151쪽에 제시된 수정의견은 지정절차를 두지 않는 것을 전제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제정안의 민관 기술혁신협의체에 대하여 행안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제정안의 민관 기술혁신협의체는 자문위원회에 해당하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하는 등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지 않고도 입법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행안부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조세 및 부담금 감면은 기재부 및 관련 부처 반대의견을 반영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에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조승래 의원안 제34조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가전략기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2조제1호에서는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려면 외교·안보 측면의 가치가 현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전략기술 중 국가안보와 관련이 없는 경우가 가능한지 의문이고 어떤 경우를 규정하려는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가전략기술은 그 범위가 넓어 조문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므로 ‘국방·안보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국가전략기술’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김영식 의원안 제22조제2항에서는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 지정·운영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역할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역할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표준화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김영식 의원안 제19조제1항에 대하여 산자부는 표준 관련 사무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소관이므로 주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하여 과기정통부는 표준화 추진 사업은 국가기술표준원의 사무가 아닌 각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수정의견에서는 과기부 의견과 다른 입법례를 반영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국가전략기술특별회계 설치에 관해서는 별도 세입 재원이 부족하고 기재부 반대 등을 고려하여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입니다.

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공무원 의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에 따라 지정되는 각종 기관들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무원 의제 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두 제정안은 적용 벌칙의 범위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대해서도 공무원 의제를 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영창 과기혁신본부장입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패권 시대에 전략기술에 대한 부처별로 산재된 역량을 집결할 수 있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 발의해 주시고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첨단전략산업법과의 차이점도 잘 정리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거의 모두 동의하면서 한 가지, 지역기술혁신허브 관련 사항은 지역 자율에 맞춰서 지역기술혁신허브를 놓는 것은 난립의 우려가 있고 혹은 비활성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역기술혁신허브는 중앙정부의 승인 하에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조율과 체계적인 육성을 함께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해서 반대 의견을 냅니다.

따라서 지역기술혁신허브에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문위원 의견에 모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발의하신 조승래 위원님.

○조승래 위원 발의된 지가 이제 10개월 정도 됐는데 어쨌든 하반기에 논의가 되게 돼서 다행입니다.

어쨌든 이 법안은 정부를 뛰어넘어서 지난 정부, 현 정부의 전략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서로 같은, 공통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논의가 지속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이—디테일한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보는데—산업부가 입법과 관련해서 여전히 반대의견을 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지난번에 공청회 할 때도 말씀드리고 소위 논의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첨단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산업부 소관으로 하되, 당초에는 원래 반도체를 특정해서 지원하기로 했던 법이에요. 그리고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략산업에 대해서 산업부가 그렇게 소관한다면 전략기술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 소관으로 해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으로 하자라는 것이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논의고 이 과정에 산업부도 동의가 돼서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가 바뀌면서 산업부의 생각이 바뀐 것인지, 그동안 숨겨 왔던 의도가 드러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 내부에서 조율 과정들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고요.

산업부의 입장이 바뀐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산업부의 입장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정부가 전략기술법에 관한 의지가 있다면 산업부의 주장은 과거에 동의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무시를 해도 된다, 이미 상당수가 많이 반영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지역혁신허브와 관련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과기부 입장에서는 지역혁신허브를 심사해서 지정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지역 차원에서 지역의 전략…… 그러니까 전략기술법에 따라서 지역의 특성화된 전략 기술들을 관리하고 또 지역의 생태계들을 유지 혹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의 필요성에 따라서 뭔가 계획을 세우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 싶고.

다만 국가가 지원할 때는 그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사업계획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 과기정통부가 심사를 해서 적절성 같은, 유효성 같은 것들을 판단해서 또 중앙정부 그다음에 중앙 계획하고의 충돌 여부 등을 판단해서 지원을 하거나 그런 것을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지역기술혁신허브 지정 자체를 일일이 과기정통부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의견을 그렇게 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전략기술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기부가 일하는 데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립하겠지요. 그런데 난립하면 뭐 합니까, 사업이 없는데. 그리고 지자체가 자기들 재원을 가지고 하겠다면 사실 그것도 권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의견을 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조승래 의원님과 제가 법안을 발의했는데 조승래 위원님께서 쪽 전 정권의 스토리를 말씀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산업부의 입장과 그다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역기술혁신허브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두 안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산업부 안 이 부분은, 국가의 미래에 대해 가지고 논의하는 또는 과학기술법을 논의하는 자리기 때문에 이것은 부처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자기 주장하는 것은 나는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산업부가 어떻고 과학기술이 어떻고 그걸 떠나 가지고 이게 높은 차원에서 이렇게 논의가 되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조금 부처 이기주의로 비쳐지는 모습은 우리가 정리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조승래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산업부에서는—충분히 입장이 이해가 갑니다마는—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입장을 정리하고요.

또 지역기술혁신허브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지역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법안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단계까지 가는 데는 아마 지역 나름대로의 노력을 각별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러나 너무 난립을 했을 때에 국가는 그대로 방치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조금은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갖추고 있는 것이 좋은가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입장을 봤을 때는 지역이 기술허브를 구축을 하면서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나 중간에 매개 역할로서 이렇게 심사 의결 해 가지고 한다기보다도 그 지역의 기술허브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적절하게 조금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입장을 내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 법안을 내신 두 분, 조승래 의원이나 김영식 의원님 안이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기술패권 선도 및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가 주장하고 있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으로 이걸 추진한다고 그러면 미래전략기술이 아닌 시장을 기존에 하던 것으로 매우 좁은 범위의 기술만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정부의 국정과제하고도 어긋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과방위에서 이걸 통과를 시켜도 산업부하고 과기부하고 부처 간에 다툼이, 업역 다툼으로 이게 법사위에서 진행되지 않도록 과기부 입장이 정리가 필요한데 차관님 의견을 여기다가 기술을 해서 이것은 법사위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그런 의견을 좀 첨부합니다.

차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영창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또 다른 분……

박완주 위원님.

○박완주 위원 두 가지 우선 확인을 한번, 특별 회계 삭제하고 일반회계로 하시는 것 우리 조승래……

○조승래 위원 그거 지금 얘기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아까 얘기하다가.

○박완주 위원 동의하셨는지 여쭙보려고 했는데 그림 따로 말씀을 하고요.

저는 이게 제정법이니까 3조에 보면 조승래 의원님 안은 국가 등의 책무 이렇게 하고 김영식 의원님 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1항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2항에서 보니까 김영식 의원님 안을 원용한 수정의견에 정부도 동의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쨌든 이러이러해서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국내외 환경 변화에 맞게 완화하거나 해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적 규정으로 뒀거든요.

국가는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시책도 만드는 것은 동의가 되는데. 지방정부에서 규제 완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다 대부분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위임된 사무인데 이게 하여튼 간 구체적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한번 여쭙보는 거지요.

예를 들어 국가산단을 한다든지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국가가 다 하면 되는데 기술에 대한 육성, 혁신, 신산업 창출 이런 등등을 지방에서 어디에다가 뭘 하려고 하는데 그런 규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지방자치가 얼마만큼 권한이 있고 실효성이 있는지를 차관님이나 전문위원님께 한번 이 부분을 여쭙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다 풀어 주는 건 맞다라고 보는데 이게 국가기술을 육성하고 이렇게 쪽 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잘 상이 안 잡혀서 여쭙보는 거예요.

차관님, 25쪽 3항입니다, 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영창 사실은 지방의 과학기술의 중요성도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과학진흥계획도 만들고 있고요, 거기서는 국가가 역점을 두는 전략기술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지역기술허브도 두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지역이 관심을 갖고 하라는 의미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그런 것들을 규정한 안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완주 위원 그래서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지방자치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들, 해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현재 아직은 준용해서…… 예를 들면 반도체, 첨단 지금 하고 있는 그것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이런 규제 완화를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게 실현 가능한가를 여쭙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택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첨단전략 이렇게 먼저 만들어 갔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지사로서 규제 완화를 하기 위한 실체적 뭐가 있느냐 이거지요. 만약에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신법이고 특별법이니까, 그리고 반도체도 어쨌든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예를 들면 뭐가 있느냐를 여쭙보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영창 위원님께서 예를 드신 것처럼 반도체에서도 용수라든가 여러 가지 허가가 지자체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지연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과학기술의 첨단전략기술에 대해서도 그런 예들, 예를 들어서 용수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지자체의 권한이……

○박완주 위원 이게 지자체가 할 수 있다는 거지요? 하여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영창 예.

○박완주 위원 전문위원님, 그런 뜻인가요?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당장 실현되는 건 반도체니까 중복돼서 하고 있는 게 바이오, 반도체, 배터리인데 우리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이차전지 이걸 증축하려고 하고 육성하려고 하는데 충남·충북도지사가 이런 거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런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나 이걸 여쭙보는 거예요.

○변재일 위원 이 법을 하는 과정에서 첨단전략 기술 육성에 관한 법하고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법하고는 차별화가 되어야 되는데 같이 가 있던 말이에요. 그래서 첨단전략산업육성법에서는 이번에 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3개 산업 분야를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그와 관련된 기술을 넣는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같은 데서는 말하자면 소재·AI

부터 양자까지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기술 단위로 들어가면.

그래서 이걸 산업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법이 사업화, 산업화까지 가는 거냐, 국가전략기술을 연구·개발·육성하는 것에 그치는 거냐, 그 범위를 분명히 해 줘야 합니다. 거기서 그 범위가 한정되지 않나 보니까 산자부하고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영창 제가 좀 대답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박성중 이야기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영창 전략기술에는 반도체 그런 산업도 있지만 우주라든가 수소……

○변재일 위원 그런데 이 법에서 산업화를 할 거냐 말 거냐, 산업화와 산업단지까지 할 거냐.

모태펀드를 만든다지 그런 것은 산업화를 하겠다는 소리로 들리거든. 전략기술의 연구·개발과 육성에 한정해서 이 법을 할 거냐, 그 연구 결과를 벤처기업의 육성이라든지 산업단지의 조성이라든지 기업의 육성이라든지 그런 그 산업화까지 할 거냐, 이 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영창 본 법에서는 기술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실증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재일 위원 그래서 실증까지만 가는 것으로 끝내 버리면 2개가 양립이 가능한데, 지방자치단체가 전략기술의 연구·개발과 육성에 무슨 관심이 있겠느냐 이거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화에 관심이 있고 공장 유치에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 이 법의 적용 범위가 애매하니까 이런 논란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거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영창 수소라든가 우주발사체도 마찬가지고요 실증단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실증단지의 허가라든가 그런 것의 육성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이 기술은 실증까지는 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변재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구·개발과 육성의 범위에 연구·개발과 실증까지만 들어간다 이렇게 해 놓으면 산자부하고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 버린다 이거

지. 그래서 이 법도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 법을 갖겠다는 것은,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 및 육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해 주면 연구·개발이라고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육성까지 넣는다면 실증까지 넣은 그 범위를 좀 더 명확히 해서 산자부 법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영창
예, 알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물론 이게 정부 입법으로 왔으면 괜찮은데 정부 부처 간에 협의가 안 돼서 정부 입법도 못 해 올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의원 입법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문제를 분명히 해 가지고서 전체 조문을 정리하면 우리도 산업자원부한테 얘기할 게 있고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은 이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이야기하십시오.

○박완주 위원 같은 얘기인데요. 여태까지 연구개발, 뭐 여기까지는 다 동의를 해요. 근데 2항 또는 3항에서는 기술혁신과 신산업 창출에 지장되는 규제 완화 이렇게 돼 버리니까 경계성이 모호한데 보통은 산업 육성 이런 것은 산업부가 하고 이런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자체는 또 관심도가 다르잖아요. 기술개발보다는 육성과 이렇게 하는 것에……

그러니까 이런 실효성이 있느냐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약간 명료하게 자구수정을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조승래 위원 조금 전에 박완주 위원 제기하신 부분들은 우리가 전략기술법을 제정하면서 검토했던 사항 중에서 핵심이 뭐냐 하면 기존의 규제나 질서가 신기술 연구개발을 저해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벽들이 있거든요. 이게 기술개발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자라는 그런 취지의 규제 개선에 대한 얘기인 것이지 그게 무슨 산업단지를 만드는 데 무슨 입지 규제라든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기술발전을 위한 규제적 장벽에 대한 문제로 우리는 접근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 아까 변재일 위원님 정리해 주신 것처럼 명확해요. 지난 정부에서 전략기술을 10개를 선정했고 이번 정부에서 12개를 했는데 우주는 또 별도의 우주진흥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

지요? 수소 관련 법도 따로 있고 원자력진흥법도 따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전략기술을 어떻게 육성하고 지원할 것이냐와 관련된 그리고 기술개발을 위한 또 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벽 혹은 제도적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의 관점에서 이 법은 법 정신에 따라서 이렇게 설계를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산업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인데.

물론 이게 딱 자르기는 어려운 게 있지요. R&D도 R&D의 주체가 정부 기관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산업영역에서 전략기술이나 이것 관련된 R&D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딱 자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흐름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R&D부터 시작을 해서 실증 단계까지는 가고 그래서 산업으로 육성해서 양산하고 산업화하고 시장에 내놓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걸 산업화 과정이니까 별도의 문제라는 것이고.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처음에 이 논의가 전개된 것이 특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 그 패키지 문제하고 전략기술을 확보하고 보호·육성하는 이 패키지는 다른 패키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당연히 현실에서는 좀 얹히긴 하지요. 전혀 얹히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얹힐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는 각자 전략기술을 선정함에 있어서 예를 들면 해당 산업을 주관하는 주무부처하고의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제가 아쉬운 것은 아까 박완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게 전략기술에 대한 일종의 완결적 지원 체제가 되려면 사실은 특별회계까지도 검토하자라는 것이 제 안이었는데 기재부는 뭘 하나 만드는 걸 반대하지요, 당연히 반대하지요.

그런데 실제로 전략기술에 관련된 특별회계 그리고 별도의 평가체계 이런 것들을 구축했을 때 국가가 이 전략기술을 정말로 전략적으로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이 법을 만든 것인데 사실상 제가 보기에 상당히 많은 수단들을 제거한 상태에서, 어찌 보면 약간 유명무실한 법이 될 가능성도 있어서 솔직히 저는 걱정은 돼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 정부, 이번 정부

전략기술을 선정했는데 전략기술 선정에 사실 법적 근거를 따질 필요는 없지만 전략기술을 선정해서 그 전략기술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법제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조금 전에 조승래 위원님께서 법안에 대한 말씀을 꼭 해 주시니 제가 말씀드리기가 편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연구개발과 실증 그다음에 산업화 이 부분들을 무 자르듯이 딱 자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연구개발과 실증과 산업화를 통해 가지고 국가의 이익을 창출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그것이 잘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그 과정에 이 법이 만들어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메인이 돼야 되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과기부와 산업부의 입장이 들어가니 그것하다 보면 원래의 핵심 개념이 손상된 꼴이 돼 버렸어요, 지금. 그것은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다 보면 무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습니다마는 예산이나 또는 법 실행 단계 이 모든 부분들을 누가 주관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아마 이 법이 만들어지는 것에 따라 가지고 부처의 손실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두 부처도 중요합니까라는 조승래 위원님이나 제가 우리 국가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이고 거기에 맞도록 밑의 부처의 역할을 조정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류해서 다시 토론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미흡하지만 출발부터 하고 법사위라든지 다른 논점에서 더 하도록, 약간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여지를 줄 것이냐, 통과시키고 어느 정도 수정되는 여지를 줄 것이냐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손을 들어서 대략 의견을 한번 여쭙어보겠습니다.

○박완주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민주주의에서 투표하는 것은 아주 올바른 방식인데……

○소위원장 박성중 아니, 이것은 서로의 의견 차이가 있고 조승래 위원님도 수정의견에 대해서 약간 다른 의견도 있으시고 김영식 위원님도 그렇고 또 정부 부처에서도 약간 다른 의견이 있지만 그래도 국가 기술패권 시대에 이런 것부터 빨리해서 출발시키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 나가는 그런 방식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일단 통과시키자는 의견에 대해서 손 한번 들어 주십시오.

○조승래 위원 잠시만요.

아까 지역(기술)혁신허브와 관련해서, 법이라는 것은 명실상부한 게 필요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걸 가지고 국가가 지역의 전략기술을 지원한다는 것은, 혁신허브를 지정한다는 건 제가 보기는 약간 과기정통부의 과욕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나 지역적으로는 예를 들면 경남 사천이나 이런 데서 항공우주산업을 전략산업으로 키우고 있으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경남 쪽에서 ‘우주 기술과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지역별로 특성화하겠다’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역 차원에서. 그러면 그것을 평가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 지원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지 굳이 그걸 혁신허브랑 별도의 뭘 자꾸 만들고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 의견을 드렸던 것이고. 이게 과기정통부에서 수용이 되면 저는 이걸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별회계 문제는 사실은 지금 여기서 제가 아무리 주장한다 하더라도 기재부가 반대하면 도저히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 저는 원래 DARPA 같은 전문기관의 설치까지도 처음에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낸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그 부분만 좀 정리되면 처리하고, 산업부가 반대한다 하더라도 우리 전체회의 과정까지 과기정통부가 최대한 산업부와 협의해서 만약에 정리가 되면 그 정리된 안을 가지고 전체회의에서 수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는 걸로 저는 제안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차관님, 참고로 산업부가 하는 것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하는 것은 이름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잖아요. 이게 ‘국가전략’이 둘 다

다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헷갈리게 돼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과학법 해 가지고 반도체를 별도로 빼면서 과학하고 같이 붙여 가지고 했는데, 우리도 차라리 산업부하고 협의해서 ‘국가전략’을 빼 버리고 ‘첨단산업법’ 해 가지고 여기에 반도체라든지 진짜 우리 쪽에서 개발한 게 완전히 전략산업으로 되는 그런 타이밍이 된다면 반도체라든지 이차전지라든지 디스플레이는 그쪽으로 넘겨주고 이쪽에서는 이쪽대로 더 첨단화시킬 수 있는 것을 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미국이든 일본이든 대부분 나라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고 미국도 그래서 반도체 과학법이라는 어정쩡한 이름으로 됐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묻기 전에, 지금 내용이 정리가 된 겁니까, 여기서 논의한 내용하고? 정리가 안 돼 있단 말이야.

○**소위원장 박성중** 전문위원이 제시한 그 안으로 일단 정리해서 통과시킬 것이냐 아니면 다시 논의할 것이냐에 대해……

○**김영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 부분은, 조승래 의원님 법안과 제 법안이 큰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산업부의 이견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서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지역(기술)혁신허브를 국가가 나름대로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법안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법안의 수정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막 좌지우지하는 것보다도 지역혁신허브가 잘할 수 있고 또 중복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국가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정도에서 저는 법안을 수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지금 법안은 그런 법안이니까 그렇게 진행하게 될 거예요. 과기부에서 약간의 보충의견을 냈으니까……

○**박완주 위원** 정부는 일단 반대한다고 했으니까, 그렇지요?

○**소위원장 박성중** 그러니까 그것은 정부의 의견이니까.

○**조승래 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 의견을 정부가 수용…… 저랑 의견이 비슷하잖아요, 지역혁신 허브 관련?

○**전문위원 이지민** 예, 허브는 그렇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것은 이제 과기정통부가 그걸 받아들이면 정리가 되는 것이고……

○**소위원장 박성중** 과기정통부도 일단 이게 첫 출발이 되는 법이니까, 앞으로도 난제가 많이 있습니다, 산업부라든지 산자위라든지 관련해서. 그래서 출발을 시키고 수정을 해 나가면서 하고, 처음부터 과기부가 모든 것의 컨트롤타워로 해서 다 하려 하지 말고 서로 융통성을 가지면서 해 나가야 되고 또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보완 개정하면 되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영창** 예, 알겠습니다.

○**박완주 위원**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지역(기술)혁신허브에 대해서……

○**변재일 위원** 그렇다면 지금 논의된 내용을 누군가가 정리해서 오늘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정리된 내용을 주세요.

특별회계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 과기부 동의하는 겁니까? 특별회계 재원이……

○**박완주 위원** 동의 안 한다는……

○**변재일 위원** 그렇지.

○**소위원장 박성중** 그것은 기재부에서도 저거 하니까, 그렇게 되면 끝도 없으니까……

○**변재일 위원** 특별회계 재원이라는 게 일반회계랑 누구 출연금일 텐데 이게 정부 R&D 예산 중 일부를 떼서 특별회계로 갈 거라고. 그러면 혁신본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 중의 일부를 떼서 특별회계로 가는 건데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경직적인 운영이 되게 된다고, 이게.

○**소위원장 박성중** 차관님, 첫째 우선 법 이름부터 우리와 산업부와의 명쾌한 역할 구분. 두 번째, 지역(기술)혁신허브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방금 이야기하신 특별회계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다음번에 이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영창** 지금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박성중** 의견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영창** 의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전반기 때

과방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여를 못 했지만 어쨌든 법안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 보이고요.

그래서 산업부와 이견도 처음 25건 중에 거의 20건은 이미 정리가 된 것 같고 5건 정도에서 산업부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산업부와 협의는 아마 최근까지 하셨던 걸로 아는데 최종적으로는 더 이상 접근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영창
제가 대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와 이견이 있는 부분은 명칭이라든가 정의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서는 바꿀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것도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잘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과기정통부의 최종 의견은 오늘 말씀하신 것을 잘 받아들여서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모두 동의하며 이것대로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이정문 위원 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에 과기부에서는 다 동의하신다는 말씀이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영창
예, 모두 동의합니다.

○이정문 위원 알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걸로 처리하자는 거예요.

○소위원장 박성중 일단 올리고.

이 두 법률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이 법률안들은 제정법률안으로서 국회법 제57조제8항 등에 따라서 축조심사가 필요하므로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을 반영한 대안을 마련하여 쟁점을 정리한 후에 오늘 회의 제일 나중에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지민 소위 심사자료 1쪽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제7조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제5조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협의회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관련 기관·단체들로부터 정책과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수렴 및 기관 간 상호 공동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해 2011년 8월에 설치되어 사업 초기에 주요 안건들을 협의하였습니다. 그

러나 2016년부터 협의회 개최 수가 감소하여 2019년 이후 협의회 개최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최 실적이 없는 협의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위원회로 통폐합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안 의결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 수정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오태석 정부에서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를 그동안 필요에 의해서 2013년부터 운영해 왔는데 거의 목적이 다해서 최근에는 거의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국제과학비즈니스위원회로 업무를 이관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위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를 만든 것은 아마 기능지구, 거점지구를 포함한 인근 지자체하고의 협력 때문에 한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로 이관한다고 그랬는데 위원회 구성원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오태석 현재 구성은 정부 부처는 관계부처의 차관급이 들어와 있고 일부 민간위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는 정부 부처 간의 의견 조율 또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이 협의회는 공간적으로 그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이 회의가 안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이 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 사업이 가속기가 잘되면서 그게 무슨 기능지구, 거점지구, 연구단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랬던 측면도 사실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은 없애는 건 동의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위원회에 기능지구, 거점지구와 관련된 지자체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수단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반영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오태석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가 없어지게 되면 당연히 기

존의 대구라든지 충남 그다음에 세종 이런 지자체에서 참여해서 논의했던 틀이 없어지기 때문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새롭게 위원 할 때 그 부분 의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그 위에 세부적으로 논의의 틀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정문 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국감에서도 질의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정부의 위원회 통폐합 과정에서 아마 과기부에서 이 안을 제출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국감 전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회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 과기부에 문의를 한 결과 그때 뭐라고 하셨냐 하면 ‘비즈니스벨트위원회하고 벨트협의회 모두 존속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펼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정부에서 어떤 입장을 내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에 반하는 결정에 동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입장 변화가 생긴 이유가 뭐니까?

2022년 7월까지만 하더라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도 필요하고 협의회도 존속이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둘 다 폐지하고 통합하는 데 대해서 과기부에서는 동의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오태석 그 이후에 실제 비즈니스벨트협의회 운영 현황도……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정부 내에 기존에 운영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한 재검토 논의들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운영 현황들을 꼼꼼히 다시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본 결과 2015년까지 운영이 되었고 그 이후에 거의 개최 실적이 없었고 2019년부터 이 위원회가 관리 대상 위원회가 됐는데, 아까 조승래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그 자체로 지자체 간의 협의의 틀도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그때 그런 의견을 드렸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을 하고 위원구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좀 보완을 하면 충분히 그 역할을 같이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문 위원 그런데요 지금 이 계획에 따르면 비즈니스벨트협의회가 결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로 이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국

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는 향후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로 통합될 예정인데, 그것은 또 언제 밝을 예정이에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계획이?

저번의 통폐합 정비 방안에 따르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가 연구개발특구위원회와 통합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는 벨트위원회로 통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 다음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랑 통합하는 과정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할 건지, 왜 이걸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오태석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처음에 조성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했습니다. 현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IBS 그다음에 중이온가속기가 완성이 됐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연구개발특구와 겹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강소특구도 늘어나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거버넌스 구조를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결론은 아직 내리지 못했고요.

다만 국제과학기술비즈니스벨트와 관련해서 협의회로 돼 있는 부분은 위원회로 통합을 해서 일단 이렇게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겠다는 판단을 하고 이 법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변재일 위원님.

○변재일 위원 결과적으로 봤을 적에 사실 IBS하고 중이온가속기가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데 IBS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또 여기 기능지구라는 개념 속에서 기능지구에 대한 지원 내용이 계속 있었는데 기능지구의 역할이 상당히 미흡해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지원도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왜 협의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을 받았을 적에 별 필요 없다라고 결론을 낼 것이냐 아니면 협의회를 제대로 운영해 가지고 기능지구가 가지고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보완할 것이냐 이런 문제로 접근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기능지구하고 비슷한 것 중에서 연구개발특구, 특히 강소특구 같은 게 생기면서 애매해진 건 사실인데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된 다음에 협의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를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위원회 정비계획이라는 것은 신정부가 출범하면 항상 어느 정부든 다 해 온 겁니다. 과기정통부 소관 사항에서 그동안 운영이 부실했던 위원회를 다 없애 버리자 이런 식으로 실적 위주로 정부의 방침대로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할 것이냐?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소특구, 연구개발특구 등의 역할과 기능지구하고 중복되기 시작하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강소특구라는 개념은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개념이니까—그런 것을 정리해 가지고 이후에 다시 논의합시다.

○박완주 위원 한 말씀……

○소위원장 박성중 박완주 위원님.

○박완주 위원 제 지역구인 천안이 SB플라자를 운영하고 있는, 기능지구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구예요.

정부가 이 법안을 개정한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19년도 이후에 협의회 회의를 하지 않았다, 그렇지요? 그렇게 설명도 하셨고.

그런데 이 법은 조성 및 지원법이거든요. 그래서 조성하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저는 회의를 자주 안 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향후 지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여쭙볼게요.

차관님이 대답하시는 건가요?

그 협의회는 일단 위원들의 구성이 지구가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에요. 위원회 하고는 다릅니다. 위원회는 차관급 등 전문가들이잖아요.

두 번째로 협의회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첫째, 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둘째 벨트 내 분쟁이 생기면 조정하는 내용, 세 번째는—굉장히 중요해요—벨트 내 산학연 연계에 관한 사항이 그 지역 지구 단위에서 협의회가 하는 일이에요. 포괄적으로 위원회가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법 5조 1항 4호에 보면 조정 및 지원에 필요한 재정지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협의회가 회의를 안 해서 통합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미시적이다. 이 법을 조성법 관점으로 보면 조성 및 지원에 대해서는 만들어 놓고 향후 지속가능하게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행정 효율성을 위해서 통합해서 위원회에서 하면 된다는 게 일면 맞지만 실제 많은 돈을 들여서 오랫동안 국민들 그다음에

국회에서 논의한 내용이라고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행정편의적 입법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변재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정문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단순히 위원회를 정비하고 통합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실효성 있고 충실하게, 이게 아직 완성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가능하게 보완을 해서 할 것인지 이것은 정부가 선택해야 되는데 저는 후자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조승래 위원 지금 이 협의회 말고 여러 가지 위원회 정비 계획을 과기정통부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과기정통부가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일괄해서 정리해서 패키지로 법안을 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렵게 통과시킨 인터넷주소자원법에 따라서 인터넷정책위원회를 두게 됐는데 법 시행도 안 했는데 그걸 느닷없이 갑자기 폐지한다고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국회 입법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1소위 소관, 2소위 소관 모든 과기정통부의 위원회에 대한 일괄 정비안을 만들어서 패키지로 제출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박성중 차관님 이야기해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오태석 과기부 1차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해서 위원님의 우려가 많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업무를 하면서 국제과학비즈니스가 법이 있고 이런 체계가 갖춰져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하드웨어는 IBS도 만들어지고 중이온가속기도 만들어지고 기능지구의 SB플라자도 다 만들어진 상황에서 그러면 하드웨어는 만들어졌는데 당초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법을 입법할 당시의 목적은 어떻게 됐느냐라고 보면 IBS는 원래 기초연구 성과를 가지고 주변에 확산시켜서 지역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목적이 있었고 중이온가속기는 중이온가속기를 이용해서 관련 기업들이 집적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정을 보면 그 당초 목적에 매우 부합하지 못한 형태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하는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과학비즈니스벨트의 본래의 취지는 여전히 중요하고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보면 IBS, 중이온가속기

그다음에 각 기능지구에 있는 테들을 모아서 하는 작업은 계속 가야 된다. 그리고 그 부분을 위해서 뭘 할 거냐? 왜냐하면 하드웨어는 끝났지만 사실은 그 다음 부분들을 아직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입법 취지에 따라서 가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지 않게 그 부분은 저희가 해 나가서 새롭게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이디어 가지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회와 협의회 이런 부분들은 보시는 관점에 차이가 있을 텐데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협의회 구성이 물론 그 자체의 필요성도 있지만 이쪽 위원회에 포함을 시켜서 그 속에서 논의를 해 나가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해서 개정안을 올렸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로 통폐합해서 하는 게 정부 측 의견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오태석 예.

○소위원장 박성중 지금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께서 위원회 폐지에 대한 부분을 과기부 산하 전체를 한번 판단해 보고 그중에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또 살릴 건 살리고 통폐합할 건 하고 이런 쪽으로 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해서 차관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오태석 그게 전부 입법을 해서 해야 되는 사항들인데 그걸 모아서 논의를 할 수 있을지 하는 방법들을 같이 상의를……

○박완주 위원 신정부 길쭉아요. 아직 시간도 많은데 일괄 정리하는 게 맞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오태석 지금 위원회 관련 개정 법안들이 1소위, 2소위 다 나누어서 발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1소위, 2소위 합쳐서 전체 논의를 하시면 어떨지에 대해서는 틀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봐서 상의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알겠습니다.

다음 이정문 위원님.

○이정문 위원 잠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국감 때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과기부 소관 정부위원회 28개 중에 11개 위원회가 통합·폐지될 계획이라고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국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위원회나 이런 데는 입법이 필요하지만 입법 없이도 폐지가 가능한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11개에 대해서 효율화 계획을 그 당시에 제가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어쨌든 이번 찰나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모두 한번 보고를 드리고, 입법이 필요한 건 입법 사항 이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조승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법안 논의된 걸 처리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27일이나 이때쯤 전체회의를 하자고 지금 제안을 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1소위, 2소위 각각 위원회 통폐합과 관련된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전체회의에서 보고를 듣는 걸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박성중 그러시지요.

○박완주 위원 전체에 대해서는 조승래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안 동의를 하고요. 그것은 전체 통폐합이고.

우선 개별법으로 올라왔으니까 통합에 대한 것은 저는 보류했으면 좋겠다. 전체 논의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조성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이것을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통합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소위원장 박성중 전체 계획을 듣고 판단하는 것은 오늘은 이것을 보류해야 될 것 같아요.

○박완주 위원 개별이니까 보류하고 추가로 이렇게 통합했을 때 사례로, 협의회를 이렇게 통합하면 나머지 업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다고 하는 기본적인 무슨 안은 줘야 그다음에 이게 지속가능한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지요.

시간을 갖고 만들어 주십시오.

○소위원장 박성중 자꾸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데요. 국제과학비즈니스 조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부분은 1·2차관 전체를 해서 위원회를 검토를 해 가지고 폐지할 것은 어떤 것을 폐지해야 되고 어떤 것을 통폐합해야 될지 위원들한테 27일 전에 한번 전체 이야기를 할 수…… 각 위원별로 해도 좋고 해서 그것이 된다면 27일 의결로 가능하고 그게 안 된다면 다시 보류될 수밖에 없고, 하여튼 오늘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오태석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6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지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두 개정안은 모두 공개 대상 제재처분의 범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윤영찬 의원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모든 제재처분을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이고, 이정문 의원안은 공개 대상이 되는 제재처분의 범위는 현행 대통령령에서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대체토론에서 윤영찬 위원님께서서는 현재까지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가 1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재처분을 받으면 제재처분 사유와 함께 명단이 공개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윤영찬 의원안은 수위에 관계없이 등록된 모든 제재처분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과실 혹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경미한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자 개인 입장에서는 다소 과도한 이중 제재 및 사회적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22년 1월 6일 동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윤영찬 의원안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던 과거 제33조제7항을 현행과 같이 개정한 것인데, 법 시행 후 1년이 채 안 된 시점에 다시 과거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문 의원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잉금지 원칙을 고려하여 다른 입법례와 같이 공개 여부는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공개의 예외가 필요한 경우를 단서로 신설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개 여부를 재량행위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재적 성격의 공표를 규정하고 있는 대다수의 입법례에서 공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과기정통부 의견이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 제33조제7항에서는 공개 여부를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개정안은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일 뿐 그 대상을 확대하

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량행위로 변경할지 여부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서를 신설해서 공개의 예외사유를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또는 제재처분 정보공개 대상자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법무부에서는 제재처분의 종류 및 경중과 상관없이 모든 제재처분 결정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및 국민의 알권리 그리고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조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8쪽 수정의견입니다.

수정의견은 ‘공개할 수 있다’라고 재량행위로 수정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개 예외 사유는 단서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영창 과기정통부는 국가 R&D 사업에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위원님들의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제재처분과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의 공개는 타 법률 사례 등에 비추어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기정통부의 검토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신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이정문 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법안을 냈기 때문에 어쨌든 과거 대통령령에 있던 내용을 법에 올려서 명확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령에 있던 내용 중에 ‘기간이 5년 이상인 참여 제한’이라든지 ‘부과금액이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인 제재부가금’ 이런 부분을 해서 입법을 했더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국감과 관련해서 그 당시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는 문제는 사실 여기에 회원가입을 하고 어찌저찌하다 보니까 상당히 접근이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하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런 것을 공개해서 입찰 부정 사례를 알게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영창 그 의견에 저희도 동의하고요. 그래서 법에다가 통합정보시스템이라고 표시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법에 표현하면 거기만 한정하는 거니까 그런 의견이 더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다른 의견 없습니까?

변재일 위원님.

○변재일 위원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3쪽의 셋째에 ‘다른 입법례와 같이 공개 여부는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공개의 예외가 필요한 경우를 단서로 신설한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규제나 처벌에 관한 사항은 행정부에 재량을 주는 안 되거든요,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 그런데 이것을 공개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한 처분이거든요. 그것을 행정부에다 재량껏 ‘네가 알아서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알아서 하라’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가 필요한 것을 단서로 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전문위원 이지민 3쪽하고 4쪽의 좌측에 저희가 입법례를 넣어 봤거든요. 거기에 다른 입법례를 보면 고용보험법에서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변재일 위원 그런 법례가 잘못된 거라 이거지요. 공개할 수가 있는데 이러이러한 예외만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개하여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예외가 있으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래야지 재량이 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논란이 되고 두 분께서 개정안을 냈다는 것은 이 처벌 기준이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처럼 전혀 작동하지 않는 시행령을 만들어서 운영이 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법은 이정문 의원이 개정안을

낸 대로 법으로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그대로 처벌 기준을 상향하라는 것은 시행령에서 결정하는 것을 그대로 둔다면 국회가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처벌 기준을 참여 제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내려라, 제재 부과를 3배에서 2배로 하라, 감경 기준을 50% 하는 것은 잘못됐으니까 감경하는 경우에도 20% 정도만 해라 이런 것을 법에 근거 없이 시행령 개정하라고 할 수는 없다는 말이지요. 현재의 체제가 잘못됐다면 이것은 법으로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행정부가 집행하게끔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박완주 위원 차관님, 저도 하나 여쭙어볼 게 있는데요.

윤영찬 의원님이 이 법을 발의한 이유는, 그러니까 이정문 의원이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으로 올렸던 ‘5년 이상 참여 제한인 자’ ‘3배 이상 받은 자’ 그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변재일 위원 감경 기준하고 다 있었다니까?

○박완주 위원 84건인가 칠십몇 건이 됐는데 한 번도 오픈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항은 반드시 법으로 올리라는 말씀인 거고, 한 측면에서는 윤영찬 의원님은 이뿐만 아니라 하여튼 작든 크든 다 공개하라 이것은 좀 과하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정부의 입장인데, 시행령에도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공개하게 되어 있잖아요. 다만 감경이 됐든 조건에 안 맞아서 공개한 사항은 없지만 법으로 하면 조금 더 엄정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재량권이 없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영창 저희도 법적으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박완주 위원 그러니까 동의한다는 게 수정안은 공개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이정문 의원은 ‘하여야 하는’ 의무거든요. 이게 차이인 거지요. 이것을 받을 수 있느냐를 여쭙어본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영창 저희도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고요. 다만 타 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서 이게 법적으로, 그러니까 법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수정의견을 받은 거고요.

○박완주 위원 그런데 타 법이 옳지 않다라고

하니 명시해서 1호·2호 2건, 그러니까 5년 이상과 3배 이상 제재부가금 받은 경우는 한다 이렇게 하면 타 법이 뭐가 있든, 잘됐든 못됐든 상관없이 입법 취지가 반영되는 게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동의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영창 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법적으로 문제가 아니라 법의 기술 원칙……

○이정문 위원 저도 사실은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법안을 냈고 기존 법에도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하여야 한다’는 지속행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단서 조항에 여러 가지 예외가 있고 대통령령으로 제외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반영을 해 놔기 때문에 일단은 공개하는 걸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향후에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영창 예,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이지민 그러면 이정문 의원안에서 ‘통합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에서 ‘통합정보시스템에’는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이정문 위원 예, 그것 이외에도 할 수 있게끔.

○전문위원 이지민 예, 하고 단서 추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영창 혹시 ‘통합정보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해서 ‘등’을 넣는 것은 어떻게……

○이정문 위원 그것은 ‘등’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법의 기술 원칙이 통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하는 것은 잘 안 씁니다, 특별한 규정 외에는. 나머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거기에 대한 기술을 하는 게 보통인데 이것을 약간 반대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취지를 봐서는 여러 가지 잘못된 연구 부정행위라든지 이런 관계에서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해 가지고 그 사람이 앞으로 하지 못하도록 또 국가에 이익이 되도록 하는 취지에는 동의합니다마는 법의 기술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다른 법들의 그것을 한 번 더 체크해 가지고 괜히 과방위에서 전체적인 법 기술 원칙 여기에 어긋나는

게 혹시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오늘은 보류하고 다음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그런데 보류하는 것은 좋은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것은 할 건가 말 건가를 행정부에서 정하는 거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러이러한 경우는 안 할 수 있다 그것 법에 넣어 놔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법체계가 성립 안 하는 것이라……

○전문위원 이지민 제가 왜 이렇게 정리했는지 취지를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이게 행정부처에 뭐 뭐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부처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서 다른 입법례에 이렇게 할 수 있다 하고 예외를 뒀길래 그냥 비슷하게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하나의 방법이겠다 해서 제시를 한 거고, 저희 자료에 제시한 것처럼 현행이 ‘공개하여야 한다’기 때문에 현행대로 하셔도 어차피 하위법령에 있는 것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라는 것이 검토의견입니다.

○변재일 위원 오케이.

○소위원장 박성중 차관님 생각은 어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오태석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그러면 그대로,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제6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과 8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지민 먼저 정필모 의원안 말씀드리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사업에 융합연구를 위한 지원을 추가하고 연구회는 협동·융합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협동·융합연구사업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면서 해당 운영재원을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하며,

이사회 의결사항에 융합연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에서 연구기관의 협동·융합연구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다른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와 함께 수행하는 협동·융합연구도 포함하는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21조의2제1항에서는 ‘연구기관 간 또는 2개 이상의 연구기관 및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간의 협동·융합연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21조제4호 및 제24조제2항제6호의 ‘연구기관의 협동·융합연구’도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21조의2제2항에서는 연구회의 협동·융합연구사업에 대한 시책수립 운영재원을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제5조제1항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한다’라고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하여 규정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제25조제3항의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 역시 ‘연구기관의 협동·융합연구’로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 조문은 7쪽에서 9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정문 의원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안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지역조직을 연구회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국내에 설치한 조직으로서 해당 기관의 본원과 소재지를 달리하는 조직이라고 정의하려는 것입니다.

지역조직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설치된 지역조직뿐 아니라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사실상의 지역조직이 있는데 개정안에서 지역조직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 및 타당성조사 실시 등을 규정한 취지로 볼 때 지역조직의 개념에 사실상의 지역조직은 배제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4쪽입니다.

대다수 사실상의 지역조직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지원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은데 개정안에 따를 경우 사실상의 지역조직에 대한 재정 지원이 어려워지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과기정통부 의견 등을 고려하여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로 보입니다.

5쪽입니다.

안 제9조는 연구기관의 정관에 포함될 사항으로 지역조직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지역조직보다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있는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도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7쪽입니다.

안 제12조의3은 연구기관이 지역조직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회에 지역조직 설립·운영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연구회는 설립·운영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도권정비계획, 정책적·재정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역조직 설립·운영계획 승인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면 지역조직의 정의가 필요한데 안 제5조제3항에서 지역조직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하여 과기정통부가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이므로 지역조직에 대한 정의 없이 지역조직 설립·운영계획 승인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11쪽입니다.

연구회의 사업에 연구기관의 지역조직 운영에 대한 평가를 추가하고, 연구기관의 지역조직 설립 승인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의결 사항에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부설기관이나 다른 본원 외 조직은 제외하고 지역조직에 대한 규정만 두는 것이 타당한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오태석 먼저 정필모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융합연구사업 추진 근거 명확화와 관련해서 현행 협동·융합연구의 규정을 포함시키는 데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정의 규정에서 협동·융합연구를 ‘2개 이상의 연구기관 및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간의’ 이렇게 해서 둘 이상의 기관이 의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렇

경우에 기존의 협동연구가 연구기관 1개와 연구기관 외 다른 기관 간에 하는 협동연구를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를 2개 이상으로 하게 되면 기존의 1개 연구기관과 기타 다른 대학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제외가 되기 때문에 ‘2개 이상의’ 제한을, 그 문구를 제외해 주시기를 정부 측에서는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재원과 관련해서 연구회 재원에 관한 규정이 5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좀 있었는데 연구회의 협동·융합연구를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측면에서는 별도로 명시해 주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정문 의원님 대표발의한 것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쪽의 지역조직의 정의와 관련해서 단서조항으로 괄호에 24조에 따른 이사회 승인을 거쳐 설립된 조직에 대한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은 사실상의 지역조직이 44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사회의 승인을 거친 걸로 한정했을 경우에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에 대한 처리 문제가 좀 있어서 관련 단서조항을 제외해 주고 그냥 지역조직으로 명기를 해 줬으면 하는 게 정부 측 요청이고요.

다만 사실상의 지역조직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존치 여부를 결정하고 실제로 존치가 필요한 것들은 나중에 이사회의 승인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연구기관의 정관에 지역조직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도 정관에 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지역조직만 정관에 넣어서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7쪽, 지역조직 운영·설립과 관련해서 승인 관련 사항은 연구회가 아닌 이사회의 승인 사항으로 명기를 하는 게 전체적인 운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타당성조사 실시와 관련해서 타당성조사에서 고려해야 될 법적인 계획들을 8페이지 2항에서 즉 나열하고 있는데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보다

는 ‘연구회는 국가균형발전 등을 포함해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좀 포괄적인 규정으로 여기 명기를 해 주시면 어떨까 정부에서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단서조항으로 ‘다만, 국가적 임무수행이나 정책적 필요성 및 설립 추진의 시급성, 타당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부는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페이지 부칙에서 말씀드린 타당성조사와 관련해서, 현재 ‘타당성조사는 이 법 시행 후 제출된 지역조직의 설립·운영계획부터 적용한다’ 그리고 3조에는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지역조직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서 제출·승인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주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11쪽 지역조직 운영에 대한 평가 부분과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지금 기관 전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포함해서 현재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항을 따로 빼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문 위원님.

○이정문 위원 제가 법안도 내서……

저도 여러 가지 의견을 냈는데 지금 정부 부처에서 상당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8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이지민 잠깐만요.

지금 정부 쪽에서는 이정문 의원님 안 세 번째 쪽지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한 건데요. 지금 지역조직에 대한 정의를 두지 않고 12조의3을 규정하게 되면 이 대상이 뭔지 확정이 되지 않은 게 돼 버려서요. 넣으려면 지역조직에 대한 정의를 넣어야 될 것 같거든요.

○변재일 위원 넣어야 돼요.

○소위원장 박성중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그 부분만 빼 버리면 44개가 다 들어가는 거니까……

○변재일 위원 그러니까 이사회 승인도 없이 지역조직이 설립된 것은 대개 정치적으로 설립된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재정을 부담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은 지역조직처럼 국가재정 지원이 계속 갔던 거 아니에요? 오히려……

○박완주 위원 지방재정이지요.

○변재일 위원 지방재정만 있는 게 아니라, 국가재정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면 상관없는데……

○박완주 위원 들어가지요, 분원이니까.

○변재일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오히려 지역조직에 관한 용어의 정의까지 정확하게 해 주고 지역조직에 대해서 이사회 의결을 부칙이든지 어디든지 정해서, 일정 기간을 두고 검토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사실상의 지역조직을 지역조직으로 상향하는 그런 절차를 부칙에 넣는다든지 그렇게 해 갖고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박완주 위원 차관님, 저도 하나만……

수정안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안 받겠다는 뜻인데, 104개 조직이 있잖아요. 그중에 이사회 정관에 따라서 통과돼서 한 조직도 있고 없는 조직도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오태석 예.

○박완주 위원 검토보고뿐만 아니라 정부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방금 정의 부분에 있어서 이사회가 기통과된 게 세어 보니까 한 60개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는 그것하고 차별이 있어서 문제라는 거잖아요. 궁극적인 것은 지방조직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처럼 행간은 읽혀지고.

그런데 어쨌든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것처럼 그것은 지방조직으로 인정하고 추후에 조건에 따라서, ‘정관에 따라서 이사회에서 통과되면 지방조직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한다고 하는 의견이시거든요. 저는 동의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동의하느냐를 여쭙보는 거예요.

그래야 지방정부도 경비를 지원해 줄 수가 있고, 그런데 법적 근거 없이 지금 막 해 주니까 이정문 의원이 이런 지방조직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의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는 제도적 틀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정부에

서는 행정적 이런 여러 문제가 발생돼서 조금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방금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떠냐 이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오태석 과기부 차관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사실상의 지역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44개인데, 그것 자체를 이 조항에 의해서 운영을 못 하게 하는 상황은 막겠다는 게 기본적인 정부 의견이고요. 왜냐하면 여기 지역조직의 정의에서 ‘이사회 승인을 거쳐서 된 지역조직’으로 돼 버리면 그건 사실상의 지역조직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 앞으로 설립과 관련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타당성조사는 하는 거지만 지금 현재 사실상의 지역조직으로 있는 44개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운영은 하지만 출연연 연구회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존치 여부를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정식 조직화하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자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게 입법기술적으로 전체 이사회 이렇게 하고 유예기간을 뒤서 그 기간 동안에 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박완주 위원 그러면 거기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요.

기존에 인정한 44개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으니 새롭게 주어진 이사회 기준이나, 강화가 됐든 뭐가 됐든—그러면 기존 거나 신규나 이런 절차를 밟아서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조직은 지역조직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그렇게 운영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그런 뜻인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기관지원팀장 박병현 연구기관지원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설립 타당성을 인정받아서 이사회 승인을 거치게 되면 정식 조직화가 될 수 있겠지만 반면에 어떠한 선정 기준에 따라서 이사회 통과를 받지 못하게 되는 조직의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못하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예산 지원이 아예 불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법에서 명확하게 경과 기간이나 후속 절차들을 명시해 두었을 경우에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자율적인 운영에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우려되어서 예외적으로 이중적으로 규정하고자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변재일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서 논의된 지역조직하고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은 사실상의 지역조직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보조금이나 지원금이라든지 중앙정부의 출연금이나 지원금 그게 차이가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기관지원팀장 박병현** 예산 규모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하고 있지 않지만 출연금이 아닌 지자체의 공유지나 재산 등에 입주하는 형태로 현물 출자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재일 위원** 기초연구회나 본원에서 사실상의 지역조직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이 있는 겁니까,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지역조직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기관지원팀장 박병현** 기관에 따라 편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 지원과 인건비 지원 같은 것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재일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간에 지역조직과 사실상의 지역조직이라는 개념을 분리 도입하고 경과규정을 뒤 가지고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뒤서 사실상의 지역조직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그걸 정리를 해야지요. 그런 경과규정을 넣어 가지고 정리를 해 버리자 이겁니다.

○**박완주 위원** 정부도 그렇게 하겠다는, 방법은……

○**변재일 위원** 그러면 여기 법에서 지역조직의 용어 정의를 하고 사실상의 지역조직에 대한 것을 경과규정에 뒤서 사실상의 지역조직은 필요성이라든지 뭘 해서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지역조직으로 한다’라는 경과규정을 부칙이라든가 어디에 하나 넣자 이거지요. 그게 정 시간이 필요하면 1년이나 2년을 뒤도 좋고. 그렇게 정비를 해야지, 애매하게 이상하게 정치적으로 운영되는 이런 조직을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에서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니야.

○**이정문 위원** 저도 지금 변재일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편이고요. 사실상의 지역조직을 향후에는 어쨌든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을 하자는 취지인데 기존에 운영하던 조직들이 이 조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과규정을 뒤서 향후에는 안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조직에 2년이든 이런 부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

의를 합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한 가지 좀 묻고 싶습니다.

지역조직이 지금 보니까 104개가 있는데 연구기관 및 연구회 이사회에서 왜 44개는 승인이 안 되는지, 그냥 승인하고 지역조직으로 정식으로 하면 되는데 왜 승인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기관지원팀장 박병현** 연구기관지원팀장 박병현입니다.

이사회 규정이 명확하지 않던 시기에 설치되었던 조직들이 있고 또 단순 시설 조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문대 같은 경우에는 관측시설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조직으로 분류를 하지 않고 운영되어 오다가 최근에 법률이 정비가 되어 가면서 사실상의 지역조직으로 편입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법률에다가 사실상의 지역조직 이런 것 넣는 건 좀 웃기는 거니까 그냥 지역조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지역조직 중 그건 경과 기간을 뒤서 이사회에서 승인 등 검토해서 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법에 사실상의 지역조직 이런 것 넣는 것은 좀 말이 안 되고요.

그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이지민** 그러면 유예기간을 몇 년으로 할까요?

○**조승래 위원** 그건 정부에서……

○**변재일 위원** 정부에서 한 1~2년은 걸릴 것 같은데……

○**소위원장 박성중** 여기에서 함부로 이야기는 하지 말고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1년으로 할지 2년으로 할지 3년으로 할지 다른 기관하고의 형평성도 보고 그래 가지고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보류하고 다음번에 그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재일 위원** 좋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것들은 그대로 받고서 경과규정을 뒤서 유예기간을 몇 년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음 소위 때까지 과기정통부에서 안을 가져온다 이런 조건으로 하시는 거지요?

○**소위원장 박성중** 오케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지민 그러면 정필모 의원님 안도 오늘 의결 안 하시는 거지요?

○소위원장 박성중 예.

○전문위원 이지민 그러면 연구개발특구법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으로 임시허가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제13호에서 실증특례를 정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은아 의원안 제16조의2에서 실증특례에 대한 약칭을 두고 있는데 이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정의규정에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대한 정의를 두는 것으로 하고 안 제16조의2에서 이를 실증특례로 약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3쪽입니다.

허은아 의원안 제2조제13호와 제14호에서는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의 대상이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실증특례 대상은 신기술, 임시허가 대상은 신기술 서비스·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에 따르면 연구개발특구 내의 실증특례 제도는 연구개발 과정에서부터 부딪치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도입된 제도로서 실증특례 대상자가 다른 규제 샌드박스과 달리 사업성뿐만 아니라 기술성만 가지고 있어도 허용해 주는 구조이므로 사업화를 전제로 하는 임시허가보다 그 대상이 넓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실증특례의 대상 범위가 임시허가 대상보다 넓다고 한다면 허은아 의원안 제16조의2제13항에 따라 임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를 신기술 서비스·제품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9쪽입니다.

개정안은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하고 기업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규제특례를 신청하도록 한 단서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기업 등도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신청 주체를 확대함으로써 동법에 따른 실증특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안과 같이 실증특례 신

청권자 범위를 모든 기업으로 확대할 경우 규제자유특구 제도와 중복되어 국민 혼란 및 예산 중복 집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현행 규제 샌드박스는 각 분야별 특성에 따라 역할이 분담되어 있으므로 연구개발특구는 현행과 같이 연구개발에 목적을 둔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기업 등에 한하여 실증특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고, 연구개발특구 기업은 개별 기업 단위로 신청하는 타 규제 샌드박스도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하므로 필요하다면 현행 제도를 활용토록 하는 것이 행정비용 및 효율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현행법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요건을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신기술에 맞는 기준 등이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허은아 의원안에서는 ‘법령’을 ‘법령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허가 등의 기준·규격·요건 등은 국민의 권리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법령 등’으로 확대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16쪽입니다.

개정안은 실증특례 지정 후 변경 신청 절차, 법령 정비 요청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실증특례 제도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의3제4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관계 법률에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혁신성 및 안전성과 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익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안 제16조의2제6항제1호의 ‘안전성’을 ‘안전성’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6조의2제11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증특례 기간 종료 전이라도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제16조의3제4항과 유사·중복되는 내용이므로 통합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개정안은 실증특례를 지정받은 자가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실증특례 적용 및 실증 결과를 첨부하여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정비를 과기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제16조의3제3항에서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과기정통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증특례 적용 결과를 중복하여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령 정비를 요청한 자는 실증특례 적용 결과 제출 의무자에서 제외하도록 현행 제16조의3제3항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5쪽입니다.

허은아 의원안 제16조의2제12항은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법령 정비 착수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요청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의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실증특례의 연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6조의6제8항은 해당 신기술에 대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제16조의3제8항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삭제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규제의 신속확인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허은아 의원안은 신속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를 ‘특구 내 신기술 창출과 관련한 규제의 존재 또는 적용 여부에 대하여 국민이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외국인 및 외국법인은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의 신속확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입법례의 경우 신청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개정안에서 실증특례 및 임시허

가의 경우는 신청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의 신속확인 신청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40쪽에 수정의견이 있는데요, 일부 수정이 필요해서 말씀드리면, ‘특구에서 신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라고 돼 있는데 ‘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증 또는 사업을 하려는 자’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8쪽입니다.

허은아 의원안 제16조의7제8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임시허가 이후 과기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임시허가 기간 만료 전까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법령 정비에 착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규제 샌드박스 입법례를 참고할 때 임시허가를 함과 동시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모호하거나 불확실한 법령의 필요성 판단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법령을 정비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4쪽입니다.

벌칙규정과 관련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처벌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타 입법례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개정안의 법정형 수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안 제74조제2항제2호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7제4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자를 처벌하려는 것인데,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 및 실제 행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인은 기관인 자연인을 통하여 행위를 하므로 자연인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위자인 자연인이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

임을 지고 법인은 특별히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양벌규정이 아닌 일반적인 벌칙 조항으로는 법인을 처벌할 수 없고 자연인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제7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처벌 대상이 임시허가를 받은 자이므로 임시허가를 받은 주체가 법인이라면 그 대표자 또는 종업원 등은 처벌에서 제외되게 되어 아무도 처벌할 수 없는 처벌흡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법인 등을 위하여 실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근거로 하여 처벌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즉 양벌규정 중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라는 문구에 근거하여 실제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벌칙규정과 함께 양벌규정을 두어야 실제 행위자 및 법인을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오태석 정부 측에서는 먼저 64페이지 벌칙 및 과태료와 관련하여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증특례를 받은 자에 대한 벌칙이 2년 이하, 2000만 원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임시허가를 허가에 대한 벌칙에 포함시키면서 전체적으로 다른 규정과 다른 입법례와의 형평성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수정안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특구법에서는 실증특례에 대한 부분으로 2000만 원 그리고 2년 이하의 징역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새롭게 임시특례를 도입하면서 벌칙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좀 더 법이 개정이 되면서 오히려 국민들, 이를 하는 분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조항으로 보여서 기존의 실증특례를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저희 의견을 드리고요.

두 번째, 양벌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타 입법례에서도 관련 규정에서 양벌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해서 그 양벌규정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실증특례 신청 주체 확대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중소기업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인데, 최근에 세부적인 내용들 그리고 이렇게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다 했고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됐는데 아직 오늘 소위 진행까지, 장관까지 보고한 최종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보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위원 그러면 지금 중기부와 협의하고 있는 최종안이, 장관한테 보고 안 된 안이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오태석 지금 저희가 알기에는 중기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규제특구와의 중복성 우려 그다음에 국민들의 불편함, 이런 것 관련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했고 실무자 선에서는 저희 입장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인 의견을 저희는 받지 않은 상태라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차관까지는 어느 정도 동의가 됐고 이제 기관의 장의 최종 판단만 남아 있다 이런 거지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오태석 예.

○조승래 위원 그리고 실제로 지금 중기부가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중기부의 그런 논리라고 하면 규제 샌드박스과 규제개혁특구는 그것도 또 중복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어쨌든 하나의 아이টে마다가 규제 샌드박스를 붙여 주는 개념하고 한 아이টে만, 특정한 특구라는 공간에다가 규제특구를 부여하는 것.

그런데 지금 이 연구개발특구에 실증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공간의 여러 가지 아이টে만 대한 실증특례를 부여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규제제도의 진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원래 당초에 그렇게 설계가 됐다가 중기부의 반대로 일부 조정을 해서 안이 통과됐고 다시 원래 안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오태석 예, 그렇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정리가 다 된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남은 문제가 별칙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기존에 실증특례와 관련해서는 2년·2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현재 기존의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예를 들면 허위로 입주한다든지 이런 건 또 3년·3000만 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의 연구개발특구법의 체계를 따를 것이냐, 실증특례의 체계를 따를 것이냐 이런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런 문제여서,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과기부의 의견이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

다만 양벌규정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법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규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저는 그 부분에서는 전문위원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차관님 의견 한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오태석 양벌규정 관련해서는 소위에서 논의해서 결론 내 주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별칙·과태료는 2년에 2000만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오태석 예,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2년에 20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으로 동일하게 규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그러면 조승래 위원님, 별칙·과태료는 2년에 2000만 원, 양벌규정은?

○조승래 위원 전문위원 의견대로.

○소위원장 박성중 전문위원 의견대로?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과 10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지민 소위 심사자료 1쪽입니다.

제정안 주요 내용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을 위하여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연구기관 등에 대한 출연 근거 신설,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 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특례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동 제정법안에 대해서는 21년 11월 한 차례 법안소위를 하였고 금년 4월에 법안소위를 거쳤습니다. 지난 법안소위에서는 방사광가속기를 좀 더 확대해서 대형가속기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하 검토의견은 방사광가속기를 대형가속기로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제명에서 ‘방사광가속기’를 ‘대형가속기’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이고요.

6쪽 목적은 별다른 수정의견은 없고 일부 자구 수정의견 있습니다.

7쪽 정의 규정에서는 지금 제정안에서는 ‘방사광’, ‘방사광가속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대형가속기에 대한 정의로 대체하고요.

그리고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등’이라는 용어가 제정안에서 여러 차례 사용되고 있는데 명확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대형가속기운영기관등에 대한 정의’를 추가로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8쪽에 대형가속기에 대한 수정의견이고요, 그 아래 9쪽의 제4호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대한 수정의견입니다.

그리고 11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에 국민이나 사업자, 관계인 등의 책무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 제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3쪽,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제정안이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이 특별법에 해당하므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14쪽입니다.

일부 자구 수정 사항이고요. 그리고 ‘대형가속

기 운영기관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했기 때문에 약칭 대신 바로 해당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제정안은 방사광가속기와 관련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기술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사 입법례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지정 절차·지정 취소, 그리고 안 제6조 3항에 따른 지원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은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21쪽입니다. 임대료 등의 지원입니다.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 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임대료 면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가능하므로 제정안에 지방자치단체의 임대료 감면 규정을 두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주로 지원법적 성격을 가진 법률에서 선언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들이 있습니다.

다음 25쪽, 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입니다.

유사한 다른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경미한 자구 수정 의견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세제지원 관련 내용입니다.

조세특례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에 서 동법 및 소득세법·법인세법 등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감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고 개별 법률에서 조세특례 조치를 규정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직접 조세감면의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재부도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지원법적 성격을 가진 법률에서 선언적으로 조세감면 규정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30쪽, 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입니다.

검토의견은 전문인력 및 관련 연구기관의 국제 교류와 산학연 국제 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방사광가속기'를 '대형가속기'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수정의견은 없습니다.

32쪽입니다. 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유재산특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4조 및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정할 수 없도록 하면서 별표의 내용은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도록 하여 국유재산특례의 신설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특례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개별 법률에서 국유재산특례와 함께 두는 경우가 많은데 공유재산은 국유재산과 달리 국유재산특례제한법과 같이 특례를 규제하는 별도의 법률이 없어 다른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 제정안 제12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사용 허가 등을 국유재산특례로 추가하는 내용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 협력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소위 때 운영찬 위원님께서 가속기가 동시다발적으로 구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속기 구축의 경험이 단절되거나 분리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방사광가속기를 포함한 가속기 구축 사업에 나서고 있는 기관들이 상호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서로 인적 교류나 협업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을 위하여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아래와 같이 규정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정의견에 따르면 국가가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모호하고 대통령령에서 어떠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포괄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42쪽 권한의 위임·위탁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43쪽 부칙입니다.

안 부칙에서는 시행일만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12조는 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서 유사 입법례와 같이 적용례를 신설하여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45쪽에 적용례 규정을 수정의견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오태석 정부 측에서는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수정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재일 위원님.

○변재일 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특별하게 의견은 없고요.

지난번 법안소위에서 논의했던 것 중에서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의 협력 및 지원 이 분야는 저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 대형가속기를 설계하고 구축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우리나라에 아주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속기를 건설하면서 앞으로 동남아 등 개도국에서의 가속기 수요에 대비해서 전문성을 높여 나가고 역량을 키워 나가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가속기 관련 전문인력 간의 협력, 육성·양성 이런 차원에서 분명히 협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부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대형가속기가 지금 각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이온가속기든 방사광가속기든 여러 가지 가속기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각각의 특성을 갖고 어떻게 협동 연구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정부가 역할을 해 가지고 중이온가속기의 특성에 관해서 이러이러한 분야에서 연구를 할 수 있고 또 연계해서 방사광가속기에서는 이런 걸 할 수 있다, 양성자가속기에서는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한

다든지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이 있고, 기관 간에 전문인력의 운영이라든지 육성 차원에서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이것은 소위에서 잘 지적이 됐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취지에서 이런 개정안을 만들고 조금 더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고 그에 따른 후속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다른 의견 없습니까?

○조승래 위원 지난 소위에서 논의했던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고 해서, 저는 충분히 논의가 진행이 됐다고 보고 오늘 처리해도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다른 의견 없습니까?

○전문위원 이지민 변재일 위원님, 지금 40쪽에 정부가 제시한 13조 추가하는 것에 찬성하신다는 의견인 거지요?

○변재일 위원 찬성하는 건데, 혹시 만약에…… 교류 및 협력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 아니에요? 교류와 협력이라는 걸 만약에 좀 더 구체화하려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구축이라든가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라든지 아니면 각 가속기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개발이라든지 연구 과정 중에서의 공동연구라든지 협력체제 그런 분야가, 제가 가속기 이 문제를 하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표현한……

과기정통부에서는 여기에서 ‘교류 및 협력’이라는 것을 무슨 의미로 해석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연구개발과장 최미정 원자력연구개발과장 최미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도 대상으로 삼고 있고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의 시안이 나오면 그때 다시 의원실에 보고를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과기정통부의 입장이 같기 때문에 ‘교류·협력’이라는 용어의 표현이 그런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조금 불완전하다는 것 아닙니까? 이 문구는 전문위원하고 과기정통부하고 협의해서 확정해 주세요.

○조승래 위원 그것은 소위원장님한테 위임해서 그렇게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이 법률안도 제정법률안으로

서 국회법 제57조제8항 등에 따라서 축조심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을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하여서 쟁점을 정리한 후에 오늘 회의 마지막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지민 위원장님, 이 원자력법안은 요 사실 복잡한 내용이 아니라 지금 수정의견을 다 합치면 조문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임해 주신 부분만 저희가 보완하는 걸로 하고 의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소위원장 박성중 다시 정리를 해 주세요.

의사일정 제12항부터 18항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위원장님, 원안위 사무처장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그러면 저분들이 계실 때 그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전문위원 이지민 예, 지금 의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방사광가속기 구축 법안은 조문을 복잡하게 수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위임한 부분만 저희가 수정하면 될 것 같거든요.

○변재일 위원 자꾸 수정은 위원장한테 위임해서 그렇게 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박성중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런데 축조심사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전문위원 이지민 그런데 저희가 1조부터 쪽조문을 했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전문위원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소위원장 박성중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지민 지금 배부해 드리는 것은 아까 위원님들 논의하신 내용, 수정의견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다만 제3조에 관해서 박완주

위원님께서 2항에 대해서 ‘해소하여야 한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셔서 사실 비슷한 입법례가 있기는 합니다만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설치 부분은 넣지 않았고요. 그리고 허브 부분은 지정 절차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3항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2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18항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 안건은 아닙니다마는 이 법률안들과 동일 제명으로 지난해 우리 소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법률안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소위 자료 16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8항까지 7건의 원안위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은 원안위의 대통령 소속으로의 변경, 상임위원 증원, 상임위원의 사무처장 겸임 규정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제1항은 김영식 의원님 안, 홍석준 의원님 안, 박성중 의원님 안 모두 원안위를 현행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미국의 경우 대통령 소속 장관급 독립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주요 원전국가와 같이 원자력 안전규제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직의 위상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고,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한준호 의원안이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 중입니다.

다만 원안위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최소화하려는 정부 기조 등을 고려할 때 정부 내 조직을

담당하는 행안부 등과의 조율을 통한 정부 입장 정립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고 행안부는 현재도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현행 유지 필요 입장입니다.

다음 18쪽을 보시면 안 제3호의2는 국무총리 행정감독권의 예외로 원자력안전재단 임원 승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원안위법 제정 이후 설립된 원자력안전재단 임원 승인에 관한 사항이 행정감독권의 예외에서 누락되어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20쪽을 보시면 미국·프랑스·일본의 원안위 위원 전부가 상임으로 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원안위 상임위원 증원을 통해 원안위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제1항 중 수정의견으로 박성중 의원님 안과 같이 현재 위원장을 포함하여 2명인 상임위원을 3명으로 증원하는 안을 제시하였는데 원안위는 앞서와 같은 이유로 신중 검토 필요 입장입니다.

다음 24쪽을 보시면 안 제3항으로 뒤에서 원안위의 사무처장과 상임위원의 겸임 규정이 삭제되는 것을 반영하여 현행과 같이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이 각각 정부위원이 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5쪽을 보시면 원안위 위원의 자격 요건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2020년 11월, 2021년 3월 두 차례 법안소위에서 원안위 설립 목적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할 필요성 등을 이유로 신중 검토 필요 의견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도입 찬성 의견이 있었으므로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34쪽을 보시면 안 제5조 2항 중 원안위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할 경우 위원장의 대통령 임명 시 국무총리 제청 절차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보이고 나머지 원안위 위원 구성 방식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39쪽을 보시면 위원장직무대행 순서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2명인 상임위원을 3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안 제6조 4항 중 위원장이 미리 정한 상임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위원 2명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42쪽을 보시면 김영식 의원님 안, 홍석준 의원안, 박성중 의원님 안 모두 상임위원의 사무

처장 겸임 규정을 삭제하고 있으며 위원회 임기 만료 후 사무처장 공석으로 인한 행정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으며 방통위·금융위·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타 합의제 행정기관의 경우 사무처장과 상임위원을 별도로 임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같은 내용의 한준호 의원안이 전체회의에 계류 중입니다.

다만 원안위는 앞서와 같은 이유로 신중 검토 필요 입장입니다.

다음 45쪽의 안 제10조 1항은 원안위 위원 결정 사유 중 용역 수탁금액 상향 내용이고, 다음 46쪽을 보시면 안 제12조는 원안위가 소관 사무를 심의 의결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하위규칙으로의 위임 근거를 명확화한다는 점에서 타당해 보입니다.

다음 53쪽을 보시면 부칙의 안 제3조 2항으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해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 이 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두었고, 다음 54쪽의 안 제4조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무처장은 이 법에 따라 새로이 사무처장이 임명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사무처장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두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간단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임승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임승철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기관의 소속, 위원의 자격 요건, 위원 구성 방식 등을 변경하여 원자력안전위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대통령 소속으로의 변경, 상임위원의 확대 및 별도 사무처장을 두는 것 등 조직체계 변경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 조직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원안위의 현행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해 온 바 있어서 아직은 정부 내에서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여러 가지 논점이 있겠습니다. 다마는 위원장이 그냥 총괄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여튼 원안위가 바라는 부분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아직은 행안부라든지 여러 가지 협조를, 협의를 해야 될 사안이 있으니까 일단 보류를 하고,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나중에 하는 것으로 그리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임승철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위원장님, 지금 원안위가 처리하기를 원하는 두 가지, 그러니까 수용하는 내용이 있는데 18쪽의 안 제3조 2항 국무총리 행정감독권 예외로 안전재단 임원 승인 사항 추가하고 그다음에 46쪽의 안 제12조 원안위 심의 의결 사항의 하위규칙 위임 근거 신설 내용, 이 내용을 담은 부분도 이번에 처리 안 하시고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소위원장 박성중 같이 처리하시지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니까.

오늘은 이것으로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오늘 제안한 위원회안의 작성 및 체계·자구 정리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률안을 신속히 작성하여 위원님들께서 전체회의 전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추후 일정을 협의하여 정해지는 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안위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부처 관계자분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들 그리고 국회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변재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예, 의사진행발언하고 산회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박성중 위원장님 오래간 만에 법안을 신속하게, 아주 명쾌하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오늘 법안심사를 하면서 수석전문위원하고 전문위원들이 사전에 검토보고한 그 내용이 너무나 충실했던 것 같습니다. 세 분에게도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변 위원님, 선배 위원님으로서 좋은 말씀, 덕담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위원(9인)

김영식	김영주	변재일	박성중
박완주	이정문	장경태	조승래
하영제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전문위원	이지민
입법심의관	김충섭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오태석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영창		
거대공공연구정책관	권현준		
과학기술정책국장	정희권		
성과평가정책국장	오대현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임승철		
기획조정관	손명선		

(16시38분 산회)